

우루과이라운드와 석유유통업 개방 영향과 대책

金 基 洪
<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 책임연구원>

I. UR와 서비스협상

1. UR의 현황

(1) 지난 2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TNC(무역협상위원회 : UR의 최고의사결정기관) 회의를 계기로 UR은 재개되었음.

① 지난해 12월의 부뤼셀 각료회담에서는 농산물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C의 대립 때문에 1991년으로 협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② 지난 2월 EC가 농산물협상을 국내보조, 시장 접근, 수출경쟁, 위생검사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동의한 것이 협상재개의 실마리가 되었음.

(2) 이번 TNC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상지침과 협상과제를 결정하였음.

① 협상지침 : 각료선언과 중간평가는 유효, 협상시 한은 미설정.

② 협상과제 : 협상그룹의 축소, 쟁점에 대한 정 치적 타결 강조.

(3) 4월의 TNC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그룹이 재조정되었음. 즉 기존의 15개 협상의제가 7개로 재편성됨(〈표1〉참조).

(4) 5월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가로 막았던 미국의 신속승인절차(Fast Track)가 연장 됨으로써 협상의 전망을 밝게 해줌.

① 신속승인절차 : 미국 법률상 국제무역회담에 서의 협상권은 미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의회는 통상적으로 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행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신속승인절차에 따르면 행정부의 협상권한은 6월 말까지지만, 늦 어도 2월 말까지는 협상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신속승인 절차의 연장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이 절차를 6개월~2년정도 연장하도록 미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5) 앞으로의 협상 전망

① UR은 빠르면 1991년 말 늦어도 1992년 초에 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농산물문제에 대해 EC가 타협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CAP개혁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

– 협상참여국이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UR의 빠른 타결을 바라고 있음 : OECD각료이사회, G7, 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서 UR의 연내타결을 촉구.

– 1992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UR이 타결되기를 희망.

– 협상의 타결시점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 오

히려 협상의 조기타결을 유도할 수도 있음.

〈표 1 UR의 새로운 7개 협상그룹〉

협상그룹	의장	이전의 협상의제
시장접근	Denis/캐나다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
농산물	던컨/GATT사무총장	이전과 같음
섬유	"	"
서비스	Jaramillo/호주	"
규범체정	Maciel/브라질	보조금·상계관세, 반덤핑관세 ¹⁾ , 세이프가드, 선적천검사 ²⁾ , 원산지 ³⁾ 규정, 기술장벽 ⁴⁾ , 수입허가 절차 ⁵⁾ 관세평가, 정부구매 ⁶⁾ , GATT조문
무역관련투자 (TRIMs)	"	이전과 같음
지적소유권 (TRIPS)	Anell/스웨덴	이전과 같음
제도적문제 (Institutions)	Muro/우루과이	최종의정서(final act) ⁷⁾ , 분쟁해결 절차 GATT 기능강화

- 註) 1) 이전의 MIN 협상의제임.
2) 이전의 비관세조치 협상의제임.
3) 새로이 추가된 협상의제임.

2. 서비스협상의 현황

(1) 개관

① 서비스협상이 서비스협상그룹(GNS)에서 진행되고 있음.

② GNS의 논의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GATS(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Trade in Services)의 제정작업
– 부분별 부속서(Sectoral Annex) 제정작업.

– 최초의 자유화 약속(Initial Commitments) 수준 결정

③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GATS가 제정된 뒤 주석서가 만들어지고 그 뒤 최초의 자유화약속을 위한 양허협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신속한 협상진행을 위해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음. 그러나 최초의 자유화약속이 마무리된 뒤 그 결과를 National Schedule로 정리해야만 서비스협상이 완결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선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National Schedule : 국별 서비스무역 자유화 계획서.

④ 현재 각국은 최초의 자유화약속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안서(Offer List)를 제출하고 있음.

⑤ 6월에는 GNS공식회의가 열리게 됨.

(2) GATS제정작업

① GATS는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을 의미함.

② 지난해 12월까지의 회의결과 GATS의 윤곽은 거의 드러나 있음(표② 참조).

〈표② GATS의 목차〉

서문(PREAMBLE)
제 1 부 서비스무역의 범위와 적용대상(SCOPE AND COVERAGE)
제 1 조 범위/정의 (Scope/Definition)
제 2 조 적용대상 (Coverage)
제 2 부 일반적 의무와 원칙(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
제 3 조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제 4 조 공개주의(Transparency)
제 5 조 개도국의 참여증대 (Increasing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제 6 조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제 7 조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제 8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Monopolies & Exclusive Service Providers)
제 9 조 Behavior of Private Operators
제 10 조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Safeguard Measures)
제 11조 국제수지방어조치(Measure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제 12조 지불(Payments and Transfers)
제 13조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s)
제 14조 예외(Exceptions)
제 15조 보조금(Subsidies)
제 3 부 구체적 서약(SPECIFIC COMMITMENTS)
제 16조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 17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 4 부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제 18조 협상(Negotiation of Commitments)
제 19조 적용(Application)
제 20조 개방스케줄(Schedules)
제 21조 개방스케줄의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s)
제 5 부 제도적 조항(INSTITUTIONAL PROVISIONS)
제 22조 협의(Consultation)
제 23조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제 24조 제도적 기관(<i>Institutional Machinery</i>)
제 25조 기술적 협력(<i>Technical Cooperation</i>)
제 26조 공동행위(<i>Joint Action</i>)
제 27조 다른 국제협정과 기구와의 관계(<i>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i>)
제 5 부 기타규정(<i>FINAL PROVISIONS</i>)
제 28조 수락 및 가입(<i>Acceptance and Accession</i>)
제 29조 발효(<i>Entry into Force</i>)
제 30조 비 적용(<i>Non-Application</i>)
제 31조 혜택의 부정(<i>Denial of Benefits</i>)
제 32조 수정(<i>Amendments</i>)
제 33조 탈퇴(<i>Withdrawal</i>)
제 34조 용어의 정의(<i>Definition of Terms</i>)
제 35조 부속서(<i>Annexes</i>)

註) 이 목차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논의의 진행에 따라 수정·보완되는 것임.

③GATS는 전체가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뒤에 양해협상의 결과인 *National Schedule*이 첨부되게 됨.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임.

(3) 부문별 부속서 제정 작업

①부문별 부속서(*Sectoral Annex*) 제정 작업은 현재금융, 통신, 항공, 해운, 육운, 관광, 건설, 전문직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노동력 이동 등 10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②부문별 부속서의 성격은 GATS의 각 조항을 특정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명료화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GATS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함.

③10개 부문의 부속서 제정 작업은 그 속도가 제각기 다름. 우선 건설, 전문직업 서비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가 불필요한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내려졌고 금융과 통신분야의 부속서는 선진국간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개도국이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부속서와 연계시켜 반대하고 있으며, 해운 및 항공 분야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아예 서비스협정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대다수 나라는 문화적인 영향을 이유로 국가간의 차별 대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④결국 부문별 부속서도 우루과이라운드의 다른 의제와 같이 선진국이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제정작업이 빨리 진행되는 반면, 개도국이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4) 최초의 자유화 약속

①최초의 자유화 약속이란 GATS와 부속서에 근거하여 서비스 부문별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②자유화 범위를 양해협상에 의해 결정함.

③양해협상을 위해 각국은 *Offer List*를 제출하고 있음.

- 1990년 12월까지 9개국이 *Offer List*를 제출 : 스위스, 미국, 일본, 호주, EC, 홍콩,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 1991년 1월 15일 *Offer List*를 제출.

- 그뒤 11개국이 제출 : 인도네시아, 상가포르, 콜롬비아, 핀란드,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④양해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는 *National Schedule*로 정리되어 GATS뒤에 첨부되게 됨.

⑤미국은 91년 1월 아래 한국을 포함한 30개 국과 양자협의함.

II. 유통업 시장개방

1. 서비스 시장개방의 의미

(1) 서비스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①GATS(부속서가 제정되지 않은 서비스부문) 혹은 부문별 부속서의 원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②관련국과의 양해협상을 통하여 부문별 시장개방의 폭과 범위를 정한 뒤.

③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임.

(2) 그런데 위①과 관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앞에서 밝힌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임.

①즉 수출국의 서비스 혹은 서비스 공급업자가 수입국에 자유로이 들어가(시장접근) 수입국의 서비스 혹은 서비스 공급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함(내국민대우).

(3) 시장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의 국경이동이 허용되거나 혹은 국내시장에 들어

와 서비스를 판매 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의 자유화, 현지법인의 설립 필요성.

(4) 내국민대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행정지침, 상관행에 있어서 국내업자와 차별이 없어야 함.

① 시장 접근

- 외국인 투자(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제한 완화.
- 외국기업의 지사, 지점 설치 제한 완화.
- 외국인의 입·출국 제한 완화.

② 내국민대우

- 외국환 거래상의 제한 완화
- 외국인의 국내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2. 유통업에 대한 적용

(1) 개관

① 유통업을 개방한다는 것은 한국의 유통업에 외국자본이 손쉽게 들어와 한국소비자에게 유통서비스를 판매하고, 나아가 그 판매과정에서 외국의 유통업자가 한국의 유통업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② 현실적으로 유통업시장 개방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님.

– 유통기관의 설립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 : 백화점, 연쇄점, 체인점의 설립.

– 외국자본이 설립한 유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 : 대리점 설립에 의한 자동차, 화장품의 판매.

③ 같은 성격의 유통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기보다는 제조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넘겨주는 중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야기된 것임.

– 즉 유통서비스는 유통의 대상인 재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임.

– 그러므로 유통업의 개방은 단지 유통서비스의 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재화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임.

예 ① 자동차 소매업이 개방되더라도 외국자동차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이 한국자동차소매업에 진출할 수 없음.

예 ② 석유소매업이 개방되더라도 석유제품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 주유소는 영업 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④ 이런 유통업개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 한국의 유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금지되는 부분이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함.

– 외국인이 설립한 유통기관도 국내유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에 차별적인 각종 관행과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해야 함.

⑤ 그러나 유통업개발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GATS와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양허협상을 통해 이루어짐.

〈표③ 유통부문 Offer List의 각국 비교〉

국	포괄 범위	자유화 수준
미국	• Franchi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 노동력 : 저배인, 종업 전문가에 대한 bound
E C ¹⁾	• 도매업, 소매업 • 유통과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와 커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 • 노동력 이동에 대한 언급 없음.
스위스	• 도매업, 소매업 • Counter-tr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 내국민대우에 대한 언급 없음
일본	• 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 노동력 이동은 unbound
뉴질랜드	• 도매업, 소매업 • Counter-tr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민대우에 대한 언급 없음 • 시장접근은 노동력 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홍콩	•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제한 없으나 시장접근은 다소 제약됨.
호주	• Offer하지 않음.	
스웨덴	• 별도의 list 없음.	
캐나다	• Offer하지 않음.	

註) 1) EC는 해당업종중 무기, 화학제품, 폭발물, 귀금속에 대한 무역은 제외함.

⑥ 그러므로 유통업개방의 폭과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양허협상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며, 현재의 단계에서는 양허협상을 위한 *Offer List*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국의 유통업개방수준을 외국의 개방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요국이 제출한 *Offer List*와 한국의 *Offer List*를 비교해야 됨.

(2) 유통업에 대한 주요국의 *Offer List*

① <표③>은 주요선진국의 유통업에 대한 *Offer List*를 정비한 것임.

② 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1) 대개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누어 오퍼하며 (2) 일본은 *distribution*, 미국은 *Franchising* 등 나름대로의 용어를 쓰고 있으며 (3) 오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임.

- 즉 유통업 전반에 대해 자유화수준을 제시하며 세부적인 업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표④ 한국의 유통부문²⁾ 오퍼리스트

	공급 양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제약
도매 ²⁾	(1) 제한 또는 조건 없음	조건 또는 제약 없음	
	(2) 제한 또는 조건 없음	조건 또는 제약 없음	
	(3) 제한 또는 조건 없음	조건 또는 제약 없음	
소매 ³⁾	(1) 제한 또는 조건 없음	조건 또는 제약 없음	
	(2) 제한 또는 조건 없음	조건 또는 제약 없음	
	(3) 매장면적 700m ² 미만의 단일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외자도입법 제7조)	조건 또는 제약 없음	

- 註) 1) 수산물, 의약품, 비료, 농약, 시계, 보석, 인삼 등을 판매하거나, 700m² 이상의 점포 및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상의 허가 취득 필요.
- 2) 곡물, 고기, 과실 및 채소, 알코올성 음료, 비료, 농약, 서적 및 신문도매, 연쇄화사업, 일반무역, 무역증개 제외.
- 3) 담배, 골동품 및 예술품, 곡물, 고기, 채소, 과실소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의약품, 화장품, 서적소매, 주유소운영, 가스충전, 연탄, 석유, 가스소매 제외.
- (1) 국경간 이동(cross border delivery)
- (2) 해외 소비(movement of consumer)
- (3) 상업적 주재(ceommmercial presence)

(3) 한국의 *Offer List*

① 한국은 지난 1월 15일 8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오퍼리스트를 GATT에 제출하여, 양허협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함. 한국의 오퍼리스트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문과, 시청각 서비스, 사업 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금융, 운송, 관광 등 8개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약

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통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약속은 <표④>와 같음.

② 유통부문에 대한 한국의 오퍼는 형태상으로는 앞의 선진6국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나, 오퍼의 대상은 지금히 제한되어 있음.

- 즉 표의 주 1) 2) 3)은 오퍼하지 않는(즉 자유화하지 않는) 유통부문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Offer*는 일종의 *Negative List* 형태를 취하고 있음.

③ 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유소운영, 가스충전, 연탄, 석유, 가스소매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이것이 이를 부문의 시장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 단지 시기가 좀 더 늦추어진다는 의미에 불과 함.

III. 석유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석유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GATS의 원칙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분석→이전 규제를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하고 그 영향이 어떠한가를 분석

1. 석유유통업에 대한 규제현황

(1)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①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는 <표⑤>로 정리하였음.

② 표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외자도입법상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되어 있음 (외자도입법상 투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됨).

<표⑤> 석유판매업의 외국인 투자규제

분류 번호	업종	주무부서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제한	개별법상 투자제한
62173	주유소운영업	동력자원부	제한	시, 도지사 허가석
62174	가스충전업	동력자원부	제한	시, 도지사 허가 유
62181	연탄소매업	동력자원부	제한	시, 도지사 허가사
62182	석유소매업	동력자원부	제한	시, 도지사 허가업
62183	가스소매업	동력자원부	제한	시, 도지사 허가 법
62189	달리분류하지 않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	동력자원부	자유화	시, 도지사 허가

③ 투자제 한업종은 주무부장관(동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함 → 현재는 금지된 상태.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

-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은 허가사항이며 각시·도는 대리점 및 주유소 허가기준을 고시하여 시행.

◦ 대리점의 허가기준 : 판매지역 제한, 저장시설, 수송장비 및 자본금의 최저한도 규정.

◦ 주유소의 허가기준 : 저장시설, 주유기의 최저한도,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3) 유통업계의 최고마진고시

- 석유사업법 관련 고시에 의하여 각 유통단계별 제품의 최고가격을 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유통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함.

(4) 조정명령에 의한 유통업 참여 제한

- 동자부는 81. 3. 14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하여 정유사와 정유사 직영 대리점에 대하여 직영대리점 및 직영주유소의 취득 및 경영을 금지하고 있음.

(5) 유통구조에 대한 규제

-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유통구조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의 관계로 되어 있으며 주유소의 직접거래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6)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지

- 현재는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업자(다국적기업)의 석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구입이 불가능함.

2. GATS와의 일치여부와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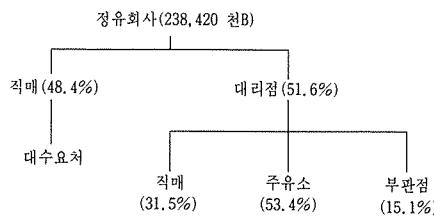
규제 현황	GATS와의 일치여부	향후 방향
·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지	· 시장접근에 위배	· 규제를 해제
· 석유판매업의 허가	· 시장접근에 위배	· 규제완화
· 유통업체의 최고마진고시	· 자유화 대상	· 규제완화
· 조정명령	· 시장접근에 위배	· 해제
· 유통구조에 대한 규제	· 내국민대우 위배 시장접근에	· 해제
· 무역업에 대한 규제	· 시장접근에 위배	· 해제

3. 석유유통업에 대한 영향

(1) 유통단계에 대한 영향

① 현황

- 1988년 현재 민수용석유제품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음.



- 계열화의 붕괴현상

◦ 석유사업법 시행령2조에 의하면 정유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주유소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대리점(일반대리점과 정유사의 자본 참여 대리점 포함)은 정유사와의 공급계약(현재 1년)에 따라 계열관계 유지함.

◦ 주유소 역시 대리점과의 계열관계를 유지해야 함.

◦ 현재 정유사-대리점의 계열화는 준수되고 있지만 대리점-주유소의 계열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복수거래 때문에 계열화가 붕괴된 상태.

- 정유사별 거래 유통업체 현황(1988)

(단위 : 개)

	유공	호유	경인	쌍용	극동	계
대리점	37	28	12	20	18	115
주유소	1,318	972	216	196	36	2,738

② 영향

- 유통업이 개방되면 대리점과 주유소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됨.

- 대리점보다는 주유소에 먼저 외국자본이 들어 올 가능성이 큼.

◦ 주유소는 복수거래 때문에 외국자본 대리점이나 정유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국내 대리점과의 공급계약 체결이 용이함.

◦ 따라서 주유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됨
→ 주유소의 경영혁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존 주유소는 도태할 가능성성이 큼.

- 대리점의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임.

• 합작투자의 형태로 새로운 자영대리점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자영대리점을 인수하려할 것임.

※ 석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지 않고 외국 정유사의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석유제품의 공급계약을 위하여 기존의 자영대리점 인수가 더 이로움

• 대리점의 판매지역제한이 해제되고 석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합작투자 혹은 전액투자의 형태로 대리점 설립이 가속화될 것임.

• 따라서 대리점에 대한 진출은 석유무역의 자유화시기, 외국자본의 국내 석유정제업 진출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임.

※ UR의 GNS는 석유유통업의 자유화부터 시작되나 석유정제업과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대략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뒤 석유유통구조는 다음과 같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 유통구조의 계열화가 촉진되면서

• 외국정유사(외국석유제품)-외국자본대리점-외국자본주유소와 국내정유사-내대리점-내주유소로 양분될 것임.

• 소비자는 외국석유제품과 국내석유제품을 선택해야 할 처지에 직면하게 됨.

(2) 석유류 가격에 대한 영향

① 현재 각 유통단계별로 제품의 최고가격을 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유통마진을 취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대리점간 혹은 주유소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최고가격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내유가가 조만간 자유화하게 됨.

② 유가가 자유화되면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기존 정유회사는 독점이윤을 상실하게 되고, 또 외국정유사의 경쟁이 격화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

IV. 대응방안

1. 정부

기본방향 : 규제완화, 철폐에 의한 경쟁여건의 조성

- 정부는 석유유통업이 개방되기 전에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석유사업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함.

(1) 주유소 허가제 한의 완화 및 자율화

①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제약) 주유소의 공급에 제약이 있게 되고, 따라서 정유사간에는 주유소의 취득을 위한 과잉경쟁이 발생함.

- 과잉경쟁은 판매비를 비정상적으로 상응시켜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자극력이 우월한 정유사의 시장과정을 가속화함.

②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2사의 대리점 판매물량이 76.7%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주유소 점유율은 83.6%나 되고 있으며, 하위3사는 각각 23.3%, 16.4%에 불과함.

	(단위 : %)					
	유공	호유	경인	쌍용	극동	합계
생산규모 점유율('89)	33.4	45.3	7.1	7.1	7.1	100
대리점 판매물량	43.7	33.0	11.0	9.1	3.2	100
점유율('88)						
거래 주유소	48.1	35.5	7.9	7.2	1.3	100
점유율('88)						

③ 이런 양상은 주유소 부족에 의한 독점지대의 양상을 떠며, 이는 주유소 확보경쟁이 소비자에 혜택을 주지 못함을 암시함.

④ 보다 근본적으로 석유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주유소 허가제 한이 완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허가제 한을 완화하여 정유5사의 주유소 확보경쟁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함.

(2) 3.14 조정명령의 해지

① 현재와 같이 석유정제업과 석유유통업이 분리된 상황하에서는 석유유통업의 현대화에 무리가 있으며, 석유정제업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도

정유회사의 유통업 참여는 필수적임.

②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석유유통업의 계열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도 조정명령은 해지될 필요가 있음.

- 석유유통의 계열화는 석유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자본주유소의 신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판매망의 과점현상을 해소하여 경쟁여건을 성숙시킬 것임.

(3) Pole-Sign제의 실시

- Pole-Sign제의 실시가 바람직한 이유는 ①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② 정유사에 의한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간접적으로는 유통구조의 계열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임.

(4) 유통망 다원화의 문제

① 석유유통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유유통망 다원화가 필요함. 즉 휘발유 전용간이 주유소, 주차장 주유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② 이것은 주유소 설립이 자유화되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됨.

(5)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 허용

① 3단계 유통구조와 병행하여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

② 기본적으로 대리점이라는 유통중간단계는 시장기능에 맡겨 그 효율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임.

③ 그러므로 주유소는 대리점과 거래할 수도 있고 정유사와 직접 거래할 수도 있음.

(6) 휘발유, 등유가격의 자율화

① 이들 석유제품의 가격자율화는 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② 불가피한 석유유통업 개방뒤의 가격자율화를 미리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함.

② 가격자율화는 등유가격을 먼저 자율화 한뒤 그 다음 휘발유가격을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유소

기본방향 : 대형화와 경영다각화를 통한 서비스기능 제고

(1) 석유유통업개방의 일차적 당사자는 주유소임. 따라서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휘발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케팅력 강화에 노력해야 함.

(2) 가장 먼저 주유소의 대형화에 노력해야 함.

① 주유소 대형화는 기존 주유소의 통폐합 혹은 신규주유소의 대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함 →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립.

② 대형화는 주유소 경영다각화의 전제임.

(3) 경영다각화의 방향 : 서비스 스테이션으로의 변화

- 입지조건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 CVS, fast-food점, Rental Shop의 신설

- 주차장에의 부수 주유소

- 휴식장소로서의 주유소

- 도로나 기상정보, 레저 및 쇼핑정보 제공

(4)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POS도입이 시급함.

※ 경영다각화의 예

• 호수부근에 낚시도구를 준비한 주유소 설치

• 주택가에 세계 각국의 맥주를 모은 편의점을 병설

- 도심의 주유소에 주차장을 설치

- 휘발유 전용의 Self-Service 주유소 설치

(5) 주유소의 경영변화를 위해서는 주유소 운영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경영 mind의 변화가 필요함.

- 서비스 스테이션으로의 변화는 일종의 업종전환으로도 볼 수 있음.

**분수없는 소비생활
국민경제 좀먹는다**